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6273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박성준·김영호·진선미  
채현일·노종면·김문수  
최혁진·문정복·김우영  
김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인가 교육시설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피해와 학습 기회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현행 처벌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 · 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할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u>&lt;신 설&gt;</u></p> | <p><u>제65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할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p> <p><u>② 관할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p> <p><u>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에 따른다.</u></p> |